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지 방 공 무 원 복 무 규 정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출산·양육 친화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신설하고,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4. 10. ~ 5. 2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7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.

제7조의7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⑮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 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

제7조의8제4호 중 “특별휴가”를 “특별휴가(제7조의7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경조사휴가는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~ ⑥ (생략)	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⑦ ----- ----- ----- ----- 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.
⑧ ~ ⑭ (생략) <신설>	⑧ ~ ⑭ (현행과 같음) ⑮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
제7조의8(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)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. 1. ~ 3. (생략)	제7조의8(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) ----- ----- ----- ----- . ---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동일한 사유로 인한 <u>특별휴가</u>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	4. ----- <u>특별휴가</u> <u>(제7조의7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경조사휴가는 제외한다)</u> ----- -----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357